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결정

사 건 87초30 법관기피신청

피 고 인 권 인 숙 (權仁淑)

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 김상철, 박원순, 이상수, 조영대, 조준의,

홍성우, 황인철

신 청 인 변호인들

주 문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당원

87노210 공문서빈조등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법관

들(재판장 판사 김연호, 판사 김의열, 판사 전봉진)은 변호인들이

신청한 문귀동에 대한 제정신청 항고사건의 기록검증(수사기록포함)과

이춘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위 각 중

거들은 위 문귀동의 피고인에 대한 성고문의 진위여부 및 그 성고문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이는 본안 피고사건의 양형을 정하고 검사의 공소권남용여부를 가리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증거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를 채택, 심리함에 있어 시간적, 기술적 제약등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위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것은 이른바 위 성고문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행정당국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재판부 법관들은 행정권력의 영향하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엄역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및 당심의 본안피고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검사가 그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건 수사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제1심 및 당심 공판정에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자료로서의 이른바
위 상고문사건에 관한 그간의 수사과정의 관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있고, 그에 관
한 고발장, 탄원서, 검찰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상고문사건의 조
사결과 발표 및 제정신청사건의 결정문등이 적1실 재판부가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공판전행상황이 비
추어 볼때 변호인들이 당시에 이르러 다시 정상자료등을 제공하기 위
하여 한 위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
유관으로서는 위 재판부 법관들이 위 피고문안사건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
아도 위 재판부법관들이 위 피고문안사건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소빙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7.

3.

10.

저관장 판 사 안 덕 전

관 사 이 용 준

관 사 일 는 영

1987. 3. 1 0